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유동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-1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3. .

발 의 자 : 유동균, 마동환, 송병길,
정형기, 조영덕, 차재홍
(6명)

1. 제정이유

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,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,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
- 1)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
- 2)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- 3)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구청장은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
- 1)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
- 2)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
- 3)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

4)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다.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6조).

라.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별첨

- 1) 『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』 제3조, 제4조
- 2)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5조, 제6조
- 3)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』 제5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(마포구청장과 협의완료)

다. 기 타

- 1) 전 문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2012.4.5~2012.4.11 실시(의견없음)
- 3) 예산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필요(별첨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,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새마을운동조직”이란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마포구협의회, 마포구새마을부녀회, 직장·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,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,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.
2. “새마을지도자”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새마을사업”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예우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,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
2.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
3.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「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새마을운동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
2.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
3.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
4.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새마을기 계양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청사, 각 동 주민센터 청사,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계양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)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공유재산 무상대부 등)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